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시정권고]

□ 민원 제목 : 영조물 배상 공제 처리 거부에 대한 이의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집 앞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 위치한 카스토퍼(이하 “주차받침목”이라 한다.)에 70대 노모가 걸려 넘어져 약 32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소요된 상황이다. 이에 담당부서에 영조물 배상 공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처리를 거부하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안내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주차장 내 주차받침목은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현장 확인 결과 주차받침목이 노상주차장 내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영조물 배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해당 시설물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토지 이용계획 상 도로에 해당하며, 해당 도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 공제에 따라 등록된 시설물이다.
- 쟁점 사고에 대해 인근 CCTV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고원인을 식별하기는 어려우나, 사고 발생지에 구급차가 출동하였다.

- 「영조물 배상공제 보통약관」 제2조 제20호에서 도로를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의 열거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 설치된 주차받침목 또한 영조물 배상공제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도로로 볼 수 있다.

□ 관계 규정 등

-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제1조, 제7조, 제14조, 제22조
- 「손해배상공제규정」 제3조

□ 판단

- 영조물 배상공제는 회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당시 CCTV 화면으로는 해당 시설물로 인한 사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고,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그러나,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에서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가배상 심의 청구나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 약관 제22조 제1항에서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회가 피공제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회에 대해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공제회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피해자에게 있다.

□ 결론

- 따라서, 영조물 배상공제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민원 내용에 따른 사고와 사고 유발 시설물인 주차받침목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설치·관리의 하자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영조물 배상공제 보통약관」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가 인정되어야만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과정이나, 피해자의 입증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담당부서에서 영조물배상공제 공제사고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내용에 대한 사고를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 후 공제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한다.